10호 1982. 1. 31.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대의원 및 각 지부 총무님들께

배 승 학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의 내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대의원여러분과 지부 및 분회 총무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82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해가 되리라고 믿고 싶읍니다. 국내적으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의사의 지시 및 감독」에서 「지도 하에」 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WCPT헌장의 개정으로 「처방의뢰에서 의료적 진단(medical diagnosis)에 의해」 바뀌지면 물리치료사의 단독업무 수행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가 넓어지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은 4년마다 열리는 WCPT총회가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한국이 '74년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후 처음으로 대표를 파견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84년에 ACPT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된 ACPT의 차기회장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소속회원들의 단합과 자질향상 및 권익보호에 힘쓰고 계시는 총무 및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일을 맡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협회는 혼자서 서지도 걷지도 못하리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이 모든 노력이 협회의 내일을 위해 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다는 굳은 신념속에 총무 및 대의원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헌신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국제간의 교류 및 유대 강화로써 5月에 열리는 WCPT총회에 한국대표를 파견하게 되고, '8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ACPT총회 및 학술대회의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준비를 시작하고 일본과 대만 및 아시아 연맹국과 상호교류 회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금년중에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연수원을 설립 운영하며, 분과학회 및 연구회를 발족하여 회원의 자질향상 및 물리치료의학의 발전에 힘쓰고 학술지의 계속적인 발간과 9월중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셋째, 위 두가지 중점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금년도에 꼭 이루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의 회장 및 전 임원은 각 지부나 분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미 1/4분기 중에 3차례에 걸쳐 회장님께서 지부를 방문하시고 계속적으로 지부 및 분회를 순방하시어 지부 및 분회조직이 구체화되고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비 납부 입니다. 벌써 '82년도 회기 (1981.11.1 ~ 1982.10.31)가 시작된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으나 '82년 회비를 납부하신 분은 2분 뿐입니다. 2,000여만원의 '8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가 조금만이라도 실천되었다면 결과는 이보다는 좋았으리라고 믿고 싶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82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건투를 빕니다.

1982. 1. 31.

총무이사겸 사무국장

본 협회 정관 개정은 1980.10.11. 회원임시 총회에서 가결된 원안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항 끝에 1981.12. 28 일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승인되었읍니다.

정 관

제 1 장 명칭 및 사무소

제 1 조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구 성

제 2 조 본 회는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장 목적 및 사업

제 3 조 본 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물리치료의학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여 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한다.

1. 물리치료의학과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물리의학 지식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4.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조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회 원

제 4 조 본 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득한 자로써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
2.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의학계의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써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5 조 회원은 대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본회의 회비 및 입회금은 별도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 사회부 장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제 5 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 8 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 명
부회장	2 명
이 사	6 명 (회장 및 부회장 포함)
감 사	2 명

제 9 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회무를 처리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11 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1.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의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선출된 임원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1. 본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6 장 회 의

제 14 조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대의원은 다음 비율로 각 시, 도, 지부에서 각각 선출한다. 각 지부의 대의원 선출 기준을 매년 대의원 총회일 현재 회원 명부에 의한 총수 10 명 단위 1 명의 비례로 한다.
   (단, 10 명 미만이라도 10 명 단위 인정)
   나. 대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 회 4/4 분기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 5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총회 1 개월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보건 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부되는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이사와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위임된 사항
3. 정관세칙의 입안개폐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제 21 조

1.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준을 받아야 한다.
2. 전 항의 사무국에서는 총무부, 학술부, 재무부, 업부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업을 수행

다.
1) 사무국의 지도, 감독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

제 7 장 감 사

제 22 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 23 조 본회의 재정수입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회비, 입회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4 조 본회의 회기년도는 11 월 1 일부터 익년 10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각 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정 예산안의 추가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6 조 본회의 은행예금 및 사업목적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

제 9 장 보 칙

제 27 조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처무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시행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 임원 및 고문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에 준한다.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982.1. 5 공문수령 : 각 기관, 단체 주요행사 제출(보건사회부)
1982.1. 6 공문발송 : 1982 년 주요행사 계획 제출에 대한 회신
1982.1. 7 공문수령 : 1) 의료기사 실기시험 문제출제 의뢰 (국립보건연구원)
첨부-서약서
2) 정관 개정 승인 (보사부)
첨부-정관 개정 승인서 1 부
공문발송 : 의료기사 실기시험 문제 출제 의뢰
1982.1.14 공문수령 : 의료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보사부)
첨부-서식 각 1 부
1982.1.19 회원 수첩 제작에 따른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접수
서울-남부 분회
서부 분회
1982.1.29 1. 회장 정진우 전남지부 방문
2. 광주 보건전문대학 졸업생을 위한 협회안내강의
장 소 : 광주 보건전문대학
1982.2. 2 : 제 2 회 물리치료사 및 교육교사 연수회
장 소 : 한사대학 재활과학 연구소
주 제 : 뇌성운동 장애아의 조기진단 및 치료방법
1982.2. 8 : 임시 이사회
안건 : 1. 스포츠 임상 물리치료연구회 설립의 건
2. 국가고시 2 차시험 절차에 관한 토의
3. 김용주 부회장님 일본 방문 귀국후 연수 및 취업에 관한 결과보고.

- 81 년 회비 납부자 -
남인숙 (No. 296)
(1981.12.31 일 납부)

- 회지 광고 찬조금 -
건강물산 ₩ 150,000
우진양행 ₩ 200,000 (정정)
국제전자 ₩ 100,000
(₩ 100,000 원 미수)
원광보건전문대학
₩ 50,000

" 협회기금 및 불우이웃돕기 카드판매 결과보고 "

카드판매에 적극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이익금 80 만원중 30 만원은 1981. 12.24. 6 시 40 분 MBC 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에 전달했음. 50 만원은 협회기금으로 예치됨.

학술지 원고 모집

- 1982 년 9 월에 개최될 학술대회에 발표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원고마감 : 1982 년 7 월 31 일.
2. 원고접수 : 협회사무국 (110. 서울종로구관훈동 198-36).
3. 원 고 료 : 200 자 원고지 1 매당 500 원
4. 기 타 :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오며,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반환하여 드리고 자세한 것은 4 면의 투고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상담 및
각종의료기 수입상사

대표 송 효 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가 91-1
진우빌딩 601 호

Tel : 778-5407

협회로 보내는 글

협회 임원님께 드립니다.

오곡이 풍성한 가을과 함께 저희 협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마산 고려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P.T 사 이현문입니다.

이 글을 드리게 됨은 오는 11월 중순에 총회와 학회가 인천에서 함께 개최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경남지방에는 협회 지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공문을 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저에게도 공문을 보내 주시어 제가 학회에 꼭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있읍니다.

그럼 빠른 회신 바라오면서 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빕니다.

1981 년 11 월 2 일

이 현 문 올림
(마산 고려병원
물리치료실 근무)

경남지방에 지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남 및 부산지부(이는 대구직할시 및 경북지부나 인천직할시 및경기지부와 같읍니다)로 묶어서 활동하고 있으니 이현문회원은 경남 및 부산지부 소속이며 지부장님은 오상렬 선생님(부산고려신경정형외과 근무)이오니 소속 지부장님께 연락하시어 모든 협회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요.

또한 본 협회에서 발간되는 협회보 및 학회지는 지부에게 보내져 지부에서 소속되어 있는 회원에 보내집니다.

(이현문 회원의 서신에 대한 회신)

××××××

회장님 귀하

물리치료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회장님 이하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현역군인으로 면허번호 496 번의 유형근이라는회원입니다.

1979 년 입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입대 전에는 강원도 사북읍 동원보건원 부속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읍니다. 입대후 강원도 지부와 본회에 연락을 못하여 궁금하던 차 우연히 친구가 보내준 협회지에 3 년간 협회와 연락이 없는 회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협회에 연락을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서신으로나마 회장님께 소식 전합니다.

저같은 현역군인인 회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회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읍니다.

아무튼 그동안 협회에 연락을 못드린 것을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협회의 일에 적극 참여하겠읍니다.

그럼 회장님의 소식 기다리면서 이만 줄이겠읍니다.

회장님 이하 협회임원들 늘 편안하시고 건강하십시요.

유 형 근 드림
(군 복무중)

군복무 중에 있는 회원들은 본 협회 시행세칙 회비 및 회비면제규정 제 2 조 1 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은 회비가 전액 면제되며 회원들의 군 입대시에는 회비면제 신청서에 소집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되었던 지부의 지부장에게 제출하여 지부장을 통해 본 협회 중앙회로 연락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락이 오는 모든 회원들에게는 매달 발간되는 협회보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 공문들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유형근 회원의 서신에 대한 회신)

학술지 원고 투고 규정

1. 本誌에 寄稿할 수 있는 資格은 本會의 會員을 原則으로 한다 但, 會員이 아닌 執筆者의 原稿라도 本誌가 必要로 하면 編輯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이를 揭載할 수 있다
2. 原稿의 種類는 原著, 綜說, 資料, 時論, 會務報告및 請託原稿等으로 하며, 他誌에 發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原稿의 揭載與否와 順序는 編輯委員會가 定한다
4. 編輯委員會는 原稿中 一部의 修正을 筆者에게 要請할 수 있다
5. 原稿는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여 橫書로 쓰고, 欧文原稿는 打字 또는 印刷體로 써야 한다
6. 學術論文에는 國文原稿는 欧文抄錄을, 欧文原稿에는 國文抄錄을 添付하여야 한다
7. 人名, 地名等 固有名詞는 原字를 使用하고 數字는 「아라비아」數字를, 度量衡은 「미터」法을 使用한다
8. 參考 또는 引用文献은 原稿末尾에 引用順序대로 記載하고, 本文에 「어께番號」를 붙이되 다음 樣式으로 한다
   單行本－著者：書名, 版數, 發行所, 發行地, 頁數, 發行年度.
   雜誌－著者：題目, 雜誌名, 卷數, 號數, 頁數, 發行年度.
9. 그림은 精密하게, 表는 簡單하게 그리고 圖表에는 說明을 붙여야 하며 寫眞은 鮮明하여야 한다
10. 別策을 必要로 하는 筆者는 그 実費를 自擔하며, 圖案費와 銅版費는 筆者에게 負擔시킬 수 있다

TENS기계 입하!

선착순 10대

U. S. A. Med. General, Inc. 제품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 가 188-7 Inc.

PRESTON ENRAF NONIUS ENRAF NONIUS DELFT

물리치료기구제작, 수입 판매.

Medelec, A Vickers Medical Co.

EMG 수입판매.

새한販売商社

金 東 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 31

MEDICAL SUPPLY CENTER BLD.

電 話 서 울(02) 762－56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